

# 讓 渡 覺 書

讓渡할 財産(會員券의 表示)

- 會員券의 名稱 :
- 會 員 番 號 :
- 會 員 區 分 :

上記 物件의 所有者 讓渡人 \_\_\_\_\_ 의 (이하甲이라한다.) 위 會員券(財産)을  
讓受人 \_\_\_\_\_ 에게 (이하乙이라한다.) 讓渡하였으므로 다음의 각 4 개 條項을  
嚴守하여 履行할 것을 書名捺印 합니다.

제 1 조. 위 會員券(財産)은 今日 乙에게 틀림없이 讓渡한 바,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異  
議도 提起하지 않는다.

제 2 조. 甲은 위 會員券(財産)의 名義改書에 따르는 一切의 書類를 제공함은 물론 기타 移  
轉節次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.

제 3 조. 讓渡人 甲은 위 會員券(財産)에 대하여 會員券 擔保 및 質權設定 의 債務 가 없음을  
確認하고, 名義改書 時 確認되지 않은 一切의 瑕疵(押留, 差押 등 기타 讓受人의 財産權  
행사에 관한 障礙 및 損害)가 발생하였을 경우 讓渡人 甲은 同一種類의 會員券 또는  
同一價額을 讓受人 乙에게 즉시 賠償하여야 한다.

제 4 조. 本 覺書의 被 覺書人(讓受人) 乙이 他人에게 上記 會員券을 讓渡하였을 경우 甲은 어떠  
한 異議도 提起할수 없으며 本 覺書의 所得人(乙의 讓受人)에게 즉시 中間節次를 생략하고,  
名義改書에 응하여야 함은 물론, 上述된 各 4 개 條項에 대한 信義則上의 作爲義務를 진다.

--- 上記 各 條項에 대하여 違約時 民,刑事上 責任은 물론, 賠償 할 것을  
記名捺印 하여 覺書합니다. ---

讓渡人 (覺書人)

住 所 :

住民登錄番號 :

姓 名 :

(印)

讓受人

貴下